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. 4. 2 선고 2020가단45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청주지방법원 2021. 10. 22 선고 2021나52635 판결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. 4. 2 선고 2020가단4552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정

담당변호사 이하운

피 고 B

변론종결 2021. 3. 5.

판결선고 2021. 4. 2.

주문

1. 충북 옥천군 C 전 1,537㎡에 관하여,
가.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과 피고 사이에 2019. 7. 1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D에게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9. 7. 24. 접수 제95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와 D은 남매 사이이고, 피고와 D은 2005년 이래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다.

나. D은 1973. 11. 20. 충북 옥천군 C 전 1,537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D은 2018. 3. 13.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(이하 ‘이 사건 차용증’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주었다.

차용증

일금 사천만원 정

상기 금액을 C 전 1,537㎡를 담보로 차용함

만일 2019. 12. 30.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담보물을 이전등기할 것을 서약함

라. D은 2019. 7. 24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7. 19.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’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 주었다.

마.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및 현재 특별한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이다. 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(피고는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,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)의 각 기재, 증인 D의 일부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D은 원고에 대하여 4,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, D의 위 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(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88다카12759, 12766 판결 등 참조),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는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4,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, ② D은 원고의 강요로 인하여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,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하여 원고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까지 방문한 D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는 D에 대하여 4,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, 위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1) 관련 법리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,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).

2) 판단

가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. 위 인정 사실에

의하면, D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나)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, 피고가 D에게 오랜 기간 동안 합계 6,000만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한다.

그러나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고 D이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,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 또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(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)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다) 따라서,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. 또한,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있어 그 원칙적인 방법은 원물반환이고, 달리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, 피고는 D에게 원물반환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노승욱